

<p>이상입니다.</p> <p>○委員長代理 李元局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p> <p>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p> <p>.....</p> <p>(報告)</p> <p>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p> <p>2.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체납하였을 때 동조례의 규정에 의거 체납과징금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그 동안 부과하여 왔으나 ○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부과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 가산금부과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3조제1항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를 삭제함. <p>4. 검토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사업면허등의 취소등)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할 때 나.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 다.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라.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마.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할때등 이상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p>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p> <p>○ 동법 제31조의2(과징금 처분)에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제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p>○ 이상과 같은 근거법에 의하여 서울시는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동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법 제32조의2에 의거 사업정지 처분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할수 있는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85.2. 부터 제정하여 운용해 왔음.</p> <p>○ 그러나 그 동안 문제가 되고있는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왔던것임.</p> <p>○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로써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해 주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위임이 없으므로 그 동안 서울시에서 운용해온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p>
--	--

<p>과징금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해 온 것은 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듯도 한데…….</p> <p>○交通局長 黃哲民 네, 그렇습니다.</p> <p>○李敬雲委員 그러나 內務部에서 公文을 내려보낼 때 執行機關에 公文을 안 준다, 이것은 조금 理解가 안 가요. 그렇지요?</p> <p>○交通局長 黃哲民 그러니까 理解가 안 가시더라도 그것을 좀 理解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서울시는 內務部の 指示나 監督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狀態였었습니다.</p> <p>○李敬雲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는 물론 現 局長께서는 交通局長으로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質問을 드려도 될는지 몰라도 他道에서는 이미 91年度부터 施行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그 內容은 알고 있었나요?</p> <p>○交通局長 黃哲民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전연 모르고 있었습니다.</p> <p>○李敬雲委員 글썬, 몰랐다고 하는 것도 理解가 좀 안 가고, 그런 것은 알았어야 되는데……. 많은 業者들한테 加算金을 물리고 있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95年度부터 현재까지 年度別로 加算金 賦課한 額數는 얼마인가요?</p> <p>○交通局長 黃哲民 한 2億 5,000萬원 정도 됩니다.</p> <p>○李敬雲委員 年度別로는 안 나와요?</p> <p>○交通局長 黃哲民 年度別로도 나옵니다. 나중에 資料로 提示해 드리겠습니다.</p> <p>그러나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그 條例가 內務部하고 統一은 되지 않았지만 條例에 의해서 加算金을 받았기 때문에 違法 不當한 行爲를 한 것은 아닙니다.</p> <p>○李敬雲委員 글썬요, 물론 論理的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 條例 自體가 잘못 制定이 되어 있지요.</p> <p>그리고 만약에 事業者가 訴訟이라도 提起한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p> <p>○交通局長 黃哲民 그것은 訴訟結果에 따라서 저희들이…….</p>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代理 李元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p> <p>지금까지 條例案에 대한 交通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p> <p>다음은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p> <p>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李敬雲委員 發言해 주십시오.</p> <p>○李敬雲委員 李敬雲委員입니다.</p> <p>專門委員의 檢討報告도 들었고, 또 交通局長의 提案說明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85年度부터 施行하는 것인데 91年度에 內務部 準則 指示가 있었다고 하는데 他道는 다 指示가 되어서 他道에서는 91年度에 이미 條例改正이 되었는데 서울시는 公文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p> <p>內務部에서 그 公文 내려온 것이 다 다른 데는 가고 서울시만 到着 안 되었다, 이것이 理解가 갈까요?</p> <p>○交通局長 黃哲民 제가 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光州市에서 交通部에 質疑를 해서 그 質疑結果가 內務部에 갔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때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內務部 傘下 機關이 아닙니다. 總理室 밑에 있는 그런 機關이 되었기 때문에 內務部가 우리 서울시한테 이러한 指示라든지, 示達을 해 주는 對象機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p> <p>○李敬雲委員 글썬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럴</p>	<p>○李敬雲委員 글썬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럴</p>